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22. 10. 4.>

[ ] 기여금 반환 [ ] 특례급여
[ ] 퇴역유족연금 [ ] 퇴역유족연금부가금
[ ]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[ ] 퇴역유족연금일시금
[ ] 퇴직유족일시금 [ ] 퇴직수당 청구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30일

청구인	성명			주민등록번호	
	자택 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	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[ ]예 [ ]아니요	
	주소				
	급여 수령 금융회사명			계좌번호	
	군인 · 공무원 · 사학연금 등의 수급 여부 [ ]수급 [ ]미수급			연금 종류	[ ]군인 퇴역연금 [ ]공무원(조기)퇴직연금 [ ]사학(조기)퇴직연금 [ ]상이연금
	학자금 대부	[ ]있음 [ ]없음		미납액 상환방법	[ ]일시상환 [ ]분할상환
	사망자와의 관계				

같은 순위 수급권자	번호	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	장해 유무 (※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만 해당)
	1				[ ]있음 [ ]없음
	2				[ ]있음 [ ]없음
	3				[ ]있음 [ ]없음
	4				[ ]있음 [ ]없음

사망한 군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계급		군번	
	사망일		사망 장소	
	사망 구분	[ ] 퇴역연금 수급 중 사망 [ ] 군 복무 중 사망	군 복무 중 사망 심의 신청 여부	[ ]공무상 사망 심의 신청 [ ]공무상 사망 심의 미신청

소속 부대 기재란	제3자 가해 사실 [ ]있음 [ ]없음					
	대부사항	대부 종류	대부액	상환액	미납액	미납액 상환방법
	[ ]있음	전세대부				[ ]일시상환
	[ ]없음					[ ]분할상환
	확인자	인사 담당자 계급 성명 (인) 전화번호: ( ) -				
		( )군 제 부대장직인				

「군인연금법 시행령」 제9조제3항, 제19조제2항 · 제4항,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청구인 제출서류	「군인연금법 시행령」 제19조제4항에 따른 특례급여 외의 급여	1. 군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. 「군인연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(유족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 3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(청구인이 「군인연금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 4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(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 5. 가족관계증명서(사망자 기준) 1부 6. 혼인관계증명서(사망자 기준) 1부 7. 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 8.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	수수료 없음
	「군인연금법 시행령」 제19조제4항에 따른 특례급여	1. 특례급여 사용계획서 1부 2. 군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3. 사망한 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한 군인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.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주민등록표 등본 2. 장애인 증명서	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1.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(실제 거주하는 주소)를 적으십시오.
2.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.
3.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.
4. 청구인의 군인 · 공무원 · 사학연금 등의 수급 여부란에는 청구인이 군인 · 공무원 · 사학연금 등에서 퇴직(퇴역)·상이연금을 수급 중인지를 표시하십시오.
5. 청구인의 같은 순위 수급권자란은 아래의 순위를 확인하여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적으십시오.
   * 유족의 우선순위: ① 25세 미만이거나 장해가 있는 자녀 ②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장해가 있는 25세 미만 또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손자녀 ③ 부모 ④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조부모
   ※ 배우자는 위 유족 중 우선순위자와 같은 순위이며,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에서 제외됩니다.
6. 소속 부대 기재란의 대부사항란에는 있음 · 없음 중 해당하는 [ ] 안에 "V" 표시를 한 후 미납된 대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 종류, 대부액, 상환액 및 미납액을 적으십시오. 이 경우 미납액에 대한 상환방법은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   가. 퇴역유족연금 · 퇴역유족연금부가금 ·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경우: 청구인이 희망하는 상환방법을 확인하여 일시상환 · 분할상환 중 해당하는 [ ] 안에 "V" 표시
   나. 기여금반환 · 특례급여 · 퇴직유족일시금 ·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경우: 일시상환의 [ ] 안에 "V" 표시

※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,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.

처리절차

청구서 작성	➜	조사 · 확인	➜	확인 · 결정	➜	지급
청구인		소속 부대의 장		국군재정관리단장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